기부금 관리 및 운용규정

기부금 관리 및 운용규정

제정 2016. 09.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부 단체나 개인이 재단법인 청송문화관광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및 운용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금”이란 외부 단체나 개인이 재단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현금 및 현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부 사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에 따른다.
2. “순수 기부금”이란 기부자가 조건 없이 재단에 증여한 기부금을 말한다.
3. “조건부 기부금”이란 기부자가 기부대상이나 지원방법, 기부방식 등을 지정한 기부금을 말한다.
4. “조건부 기부금 수혜자”란 조건부 기부에서 지정한 기부금 수혜 단체, 개인 또는 단체의 개별 단위사업을 말한다. 재단 단위사업에 대한 조건부 기부의 경우 조건부 기부금 수혜자는 당해 사업의 소관부서가 된다.

제3조(기부신청) 재단에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부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 금액 또는 기부 재산의 표시
2. 기부자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3. 조건부 기부금일 경우에는 기부 조건 및 기부 잔액 처리방법 명기

제3조의2(기부신청의 예외) 인터넷, 전화, 지로 및 대중매체 홍보를 통해 불특정다수가 참여하는 기부 건에 대해서는 당해 기부금 모금사업의 모금 방식에 따른 별도 양식과 기부신청절차로 기부신청 및 기부약정서를 대신 할 수 있다.

제4조(기부심의위원회) ① 재단은 기부금 채납여부와 채납된 기부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을 심의 및 관리하기 위하여 기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기부 심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조(조건부 기부금에 대한 조정 지원) ① 위원회는 조건부기부금에 의한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기부효과를 거두기 위해 그 금액과 지급방법, 또는 사업 내용을 기부채납 이전 또는 기부금의 지원 과정에서 조정 할 수 있다.
② 조정 지원은 기부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건부 기부금 수혜자에게 조정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기부자가 제1항에 의한 금액 또는 사업내용의 조정에 대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조건부 기부금을 채납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④ 조건부기부금의 처리는 기부약정 시 기부자가 제시한 기부조건을 우선하여 집행하며, 기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6조(기부금 채납결정 및 통지) ① 위원회는 기부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 채납여부와 기타 필요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재단은 심의결과를 즉각 기부자에게 통지하고 조건부기부금인 경우 조건부기부금 수혜자에게도 통지 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 채납여부를 통지받은 기부자는 약정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와 조건부기부금 수혜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한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채납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부금의 처리) ① 기부금을 채납하였을 때는 법인세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다.
② 재단에 채납된 순수기부금은 재단 수입지출외 별도 계정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조건부기부금은 재단 수입지출외 별도 계정으로 기부자와의 약정 내용에 따라 관리 운용한다.
③ 조건부기부금 중 제6조에 의한 조정 결과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와 사업지원 종료 후에 발생된 잔액(관리기간 중 발생된 이자 포함)은 기부자와의 약정에 따라 순수기부금으로 채납할 수 있다. 단, 기부자가 기부 약정 시 기부금액 잔액 처리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조건부 기부금 수혜자는 재단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부금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부금품을 수령하고 기부금 사용계획에 따른 결과보고 및 회계 정산 서류를 재단과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부금을 다수 회에 나누어 분납하는 경우에도 단일 기부 건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보고) 사업연도 내 발생한 모든 기부금 관리 및 운용 내역은 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결산보고에 포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기부약정서>

기 부 약 정 서

1. 기부금액 : 원정 (₩)
2. 기부종류
   □ 순수 기부금
   □ 조건부기부금 (기부대상, 지원방법, 기부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기부할 것을 약정합니다.

귀 재단의 기부금 관리규정 제5조 규정에 따라 조건부 기부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 효과상 그 금액과 지급방법, 또는 사업내용에 대한 귀 재단의 조정과, 기부금액의 관리기간 중 발생된 이자 및 사업 종료 후 발생된 잔액에 대하여 귀 재단의 처분에 동의합니다.

본 기부자와 기부금 수혜자는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주소 :
우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팩 스 번 호 :
성 명 : (성명 또는 법인명) : (인)
(법인일 경우)대표자명: 담당자명 :

(재)청송문화관광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기부금 교부신청서 양식>

(재)청송문화관광재단 조건부기부금 교부신청서

신청단체명 :

기부단체명 :

<지 원 사 업 소 요 경 비> (단위 : 천원)

총소요액	기부금 신청액	기타 재원

지원사업명 : (단체 운영 경비 지원일 경우 "단체 운영"으로 기재)

사업 개요 :

사업수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재)청송문화관광재단 기부금 관리 및 운영 규정 관리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조건부기부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명(단체명) : (인)

대 표 자 명 : (인)

담 당 자 명 :

전 화 번 호 : 사무실 - 자택 -

핸드폰 -

FAX -

계 좌 번 호 : ( )은행

예 금 주 명 :

(통장사본 첨부)

(재) 청송문화관광재단 이사장 귀하